

강원도립대학교 학생회칙

(제정) 1998-04-03

(개정) 2010-05-03

(개정) 2013-07-23

(개정) 2015-04-16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개정) 2024-04-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강원도립대학교 학생회라 칭한다.(이하“본회”라 칭한다.) <개정 2016.4.25>

제2조(목적) 본회는 학생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자치능력 배양과 지성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사회중견인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단,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하고 그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6조(효력중지) 본회의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7조(활동) 본회의 활동은 학칙을 준수하고 회칙에 의한 활동을 한다.

제8조(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술, 문화, 예술 및 체육활동
2. 각종 봉사활동
3. 학교 또는 주변의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4.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친목 등의 자치활동

제 2 장 기구, 임원, 직능

제1절 학생회

제9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는 학생회장 1인, 부학생회장 1인, 각 부장 1인 및 각 부장 밑에는 차장 1인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각 부장은 차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부서원을 둘 수 있다.

③ 학생회는 별표와 같이 조직한다.

제10조(부서) 본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두며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본회의 제반활동에 있어 필요한 경우 6개 부서에 한하여 아래의 부서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다.

1. 총무부 : 본회의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사항
2. 기획부 : 본회의 제반사업의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4. 홍보부 : 본 회의 정책과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관리부 : 본 회의 시설 관리 및 교내 게시판 등 교내 시설에 관한 사항
6. 만학부 : 만학도에 특화된 분야에 관한 사항

제11조(직무 및 선출) ① 학생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한다.

② 부학생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규정 참조)

④ 삭제<2010.5.3>

⑤ 삭제<2010.5.3>

⑥ 각급 학생간부는 학생회 간부 승인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12조(구성 및 선출) ① 대의원회는 과 회장 및 학급장으로 구성하고 의장 1인, 부의장 1인, 총무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과 회장 중에서 선출하되 대의원회에서 매년 3월말까지 직선한다.

③ 집행위원은 대의원회의 출석 요구 시 발언권은 있되, 표결권은 없다.

제13조(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회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개정 2010.5.3>
2. 학생회 예산·결산안 심의 및 승인<개정 2010.5.3>
3. 학생회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개정 2010.5.3>
4. 학생회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개정 2010.5.3>
5. 의장의 선출권
6. 학생회장 탄핵권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 ①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학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대의원 2/3이상이나, 학생 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0.5.3>

③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대의원 2/3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5조(정·부회장 불신임 결의) ① 대의원회는 정·부회장이 본 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생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불신임 결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대상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하며, 1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20일 미만일 경우 부회장 및 부서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16조(구성)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으로 구

성한다. 단, 과 회장은 학생회 집행위원회의 출석 요구 시 발언권은 있되 표결권은 없다.<개정 2010.5.3>

제17조(기능) 학생회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5.3>

1. 대의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회칙개정 및 수정발의
5. 기타 중요한 의안
6. 특별한 사정으로 대의원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학생지도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를 가지며,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나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 3 장 재 정

제19조(회비 등) ① 본 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회비는 본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의 금액은 매년 대의원회에서 정하되 학생 지도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회비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는 본 대학 학생회에서 관장한다.<2013.7.23>

제19조의 2(회비 등의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생회비를 반환한다.

1.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할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	반환 금액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까지	납입금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납입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본조신설 2010.5.3>

제20조(예산편성) ①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 2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학생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대의원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산안이 소정의 기일 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회장이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④ 예산 성립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추경예산 편성 시 학생지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승인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감사) 본 회의 회계에 대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대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학생회장 승인일로부터 차기 학생회장 승인일 직전까지로 한다.〈개정 2010.5.3〉

제 4 장 학생지도위원회

제24조(구성 및 기능) ① 본 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 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 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에 관하여는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25조(회칙개정) ① 본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1/2이상의 찬성 또는 학생회 집행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개정안을 대의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0.5.3〉

②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5. 3.)

본 개정 회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23.)

본 개정 회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16.)

본 개정 회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25.)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4.11.)

본 개정 회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